

# 2013 사회적 이슈와 인권

## 제9주제 **채플과 종교의 자유**

“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 
가지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 
침해하게 되는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.”

-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(B규약, 1966) 제18조

## 문제제기

**학교에서의 종교교육(예를 들어 채플)은  
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**

1) 사립학교의 경우

**학교법인 대 학생 (대사인적 효력)**

2) 국·공립학교의 경우

**종교교육 금지 (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)**

# 종교교육과 관련된 인권

## 1. 종교의 자유의 내용

- ① 신앙의 자유
- ② 종교의식의 자유
- ③ 종교교육 및 선교(전파)의 자유
- ④ 종교적 집회·결사의 자유

## 종교교육과 관련된 인권

### 2.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

- ① **특정**한 종교적 **신앙**을 갖지 못하게 **금지(규제)**  
또는 특정한 종교적 신앙을 갖도록 **명령(강제)**
- ② 특정한 종교와 관련된 **의식**을 허용하지 않거나  
종교의식의 **시간, 장소, 방법** 등을 제한
- ③ 특정한 종교에 관한 **교육**이나 **전파**를 **금지·명령**
- ④ 종교적 **집회** 또는 **결사**를 금지하거나 **명령**

## 종교교육과 관련된 인권

### 3. 국교부인의 원칙과 정교분리의 원칙

- 헌법 제20조 제2항
- 특정종교 재정지원 등 특혜 부여 금지
- 국가가 종교에, 종교가 국가에 간섭 금지

##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

### 1. 신앙의 자유(내면적인 자유)

- 결코 제한될 수 없는 <절대적 기본권>이라는 견해
- 제한될 수 있는 <상대적 기본권>이라는 견해

### 2. 종교적 신앙을 외부에 표현하는 종교의식의 자유, 종교교육 및 종교전파의 자유, 종교적 집회·결사의 자유 - 제한 가능

##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

1. 학교의 인권과 적합성원칙
2. 학생의 인권과 필요성원칙
3. 인권의 충돌과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
  - ① 학생의 학교선택권
  - ② 종교교육에 관한 학교의 설명의무
  - ③ 학교의 대체과목개설의무
  - ④ 종교교육내용의 탄력성
  - ⑤ 이수요건의 완화
  - ⑥ 종교교육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
  - ⑦ 교사의 종교적 다양성 확보

## 종교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

### 1. 보호권의 법리

- 입법자의 형사법제정에 관한 의무

### 2. 대사인적 효력의 법리

- 법관의 기본권 존중의무



## 채플 관련 대법원 판례

### 종교교육의 강제에 의한 손해배상책임

(대판 2010. 4. 22, 2008다38288)

(1) 학교 강제배정으로 **종립학교**가 가지는 **종교교육**의 자유 및 **운영의 자유**와 **학생**들이 가지는 **소극적 종교행위**의 자유 및 **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**가 서로 **충돌**하는 경우

(2) 종립학교가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의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을 갖지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, **학생의 종교**에 관한 **인격적 법익**을 **침해**하는 **위법한 행위**이고,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한 사례

# 토론

1. **종교의 특성은 무엇인가?**
2. **종립학교는 자신의 기반이 되는 종교를 전파할 자유를 갖지 않는가?**
3. **종교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?**